더샵 하남에디트시 입주자모집공고

THE SHARP 하남에디트시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이 누락 및 잘못 서술된 경우에는 우선분양, 본 아파트의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thesharp.co.kr)에 게시한 내용은 청약 및 계약 시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공급 : 849세대(일반공급 709세대, 특별공급 140세대)
  - 견본주택 운영안내
    - 오픈 일정 : 2025년 10월 예정(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http://www.더샵하남에디트시.kr) 및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게만 개별 안내)
    - 견본주택 운영 : 견본주택 운영 기간 중 주차장 혼잡 및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견본주택 운영 종료 시까지 방문객 전원에 대하여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운영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 (하남시 덕풍동 주택전시관 옆)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청약자격 :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 57조에 따라 결정
  - 입주예정일 : 2027년 12월 예정
  - 분양가격 : 추후 결정
  - 공급대상 : 수도권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 공급규모 : 전용면적별 총 849세대 (일반공급 709세대, 특별공급 140세대)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
  - 문의처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 031-8090-8000 / 견본주택 문의 : 031-8090-8001
  - 인터넷 청약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청약홈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 모델하우스 : 별도 운영하지 않음
  - 홈페이지 : 더샵하남에디트시.kr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약식표기)	동호구분	총 공급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건축비	대지비	계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22.04.04	2022.07.04	2022.10.04	2023.01.04	2023.04.04	2023.07.04	2023.08.01	2023.11.01	입주지정일
39A	104동(5,6호)	12~18	101,546,965	198,813,035	300,360,000	60,072,000	30,036,000	30,036,000	30,036,000	30,036,000	30,036,000	30,036,000	30,036,000	60,072,000	
		19층이상	3	106,676,965	198,813,035	305,690,000	61,138,000	30,569,000	30,569,000	30,569,000	30,569,000	30,569,000	30,569,000	61,138,000	
39B	104동(3,4호)	12~18	3	106,693,040	198,496,960	305,190,000	61,038,000	30,519,000	30,519,000	30,519,000	30,519,000	30,519,000	30,519,000	61,038,000	
		19층이상	3	106,693,040	198,496,960	305,190,000	61,038,000	30,519,000	30,519,000	30,519,000	30,519,000	30,519,000	30,519,000	61,038,000	
50	104동(4호)	12~18	4	125,652,821	246,017,179	371,670,000	74,334,000	37,167,000	37,167,000	37,167,000	37,167,000	37,167,000	37,167,000	74,334,000	
		19층이상	1	132,242,811	246,017,189	378,260,000	75,652,000	37,826,000	37,826,000	37,826,000	37,826,000	37,826,000	37,826,000	75,652,000	
59A	101동(1,2,3,4호) 102동(3,4호)	11	148,764,289	281,345,731	430,110,000	86,022,000	43,011,000	43,011,000	43,011,000	43,011,000	43,011,000	43,011,000	43,011,000	86,022,000	
	103동(1,2,3,4호)	3	149,179,294	281,345,731	430,525,000	86,105,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86,105,000	
	104동(1,2호)	4	149,179,294	281,345,731	430,525,000	86,105,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43,053,000	86,105,000	
	105동(1,2,3호)	5~11	153,344,289	281,345,731	435,290,000	87,058,000	43,529,000	43,529,000	43,529,000	43,529,000	43,529,000	43,529,000	43,529,000	87,058,000	
	106동(1,2호)	12~18	157,924,289	281,345,731	439,870,000	87,974,000	43,987,000	43,987,000	43,987,000	43,987,000	43,987,000	43,987,000	43,987,000	87,974,000	
		19층이상	12	159,304,289	281,345,731	440,650,000	88,130,000	44,065,000	44,065,000	44,065,000	44,065,000	44,065,000	44,065,000	88,130,000	
59B	105동(4호) 106동(3,4호) 107동(3,4호) 108동(3,4호)	1	149,322,431	282,397,569	431,720,000	86,344,000	43,172,000	43,172,000	43,172,000	43,172,000	43,172,000	43,172,000	43,172,000	86,344,000	
		3	170,622,431	282,397,569	453,020,000	90,604,000	45,302,000	45,302,000	45,302,000	45,302,000	45,302,000	45,302,000	45,302,000	90,604,000	
		4	170,622,431	282,397,569	453,020,000	90,604,000	45,302,000	45,302,000	45,302,000	45,302,000	45,302,000	45,302,000	45,302,000	90,604,000	
		5~11	174,782,431	282,397,569	457,180,000	91,436,000	45,718,000	45,718,000	45,718,000	45,718,000	45,718,000	45,718,000	45,718,000	91,436,000	
		12~18	179,962,431	282,397,569	462,360,000	92,472,000	46,236,000	46,236,000	46,236,000	46,236,000	46,236,000	46,236,000	46,236,000	92,472,000	
		19층이상	11	181,632,431	282,397,569	464,030,000	92,806,000	46,403,000	46,703,000	46,703,000	46,703,000	46,703,000	46,703,000	93,406,000	
		20층이상	1	183,012,431	282,397,569	465,410,000	93,082,000	46,541,000	46,841,000	46,841,000	46,841,000	46,841,000	46,841,000	93,682,000	
84	104동(1,2호) 105동(1,2호) 106동(1,2호) 107동(1,2호) 108동(1,2호)	3	200,052,431	282,397,569	482,450,000	96,490,000	48,245,000	48,245,000	48,245,000	48,245,000	48,245,000	48,245,000	48,245,000	96,490,000	
		4	212,627,374	351,352,626	563,980,000	112,796,000	56,398,000	56,398,000	56,398,000	56,398,000	56,398,000	56,398,000	56,398,000	112,796,000	
		5	240,457,374	351,352,626	591,810,000	118,362,000	59,181,000	59,181,000	59,181,000	59,181,000	59,181,000	59,181,000	59,181,000	118,362,000	
		6	243,377,374	351,352,626	594,730,000	118,946,000	59,473,000	59,473,000	59,473,000	59,473,000	59,473,000	59,473,000	59,473,000	118,946,000	
		7	252,657,374	351,352,626	604,010,000	120,802,000	60,401,000	60,401,000	60,401,000	60,401,000	60,401,000	60,401,000	60,401,000	120,802,000	
		8	258,757,374	351,352,626	610,110,000	122,022,000	61,011,000	61,011,000	61,011,000	61,011,000	61,011,000	61,011,000	61,011,000	122,022,000	
		9	267,917,374	351,352,626	619,270,000	123,854,000	61,927,000	61,927,000	61,927,000	61,927,000	61,927,000	61,927,000	61,927,000	123,854,000	
		10	278,297,374	351,352,626	629,650,000	125,930,000	62,965,000	62,965,000	62,965,000	62,965,000	62,965,000	62,965,000	62,965,000	125,930,000	
		11	294,837,753	388,942,247	683,780,000	136,756,000	68,378,000	68,378,000	68,378,000	68,378,000	68,378,000	68,378,000	68,378,000	136,756,000	
		12~18	328,577,753	388,942,247	717,520,000	143,504,000	71,752,000	71,752,000	71,752,000	71,752,000	71,752,000	71,752,000	71,752,000	143,504,000	
		19층이상	13	335,977,753	388,942,247	724,920,000	144,984,000	72,492,000	72,492,000	72,492,000	72,492,000	72,492,000	72,492,000	144,984,000	
		20층이상	4	343,377,753	388,942,247	732,320,000	146,464,000	73,232,000	73,232,000	73,232,000	73,232,000	73,232,000	73,232,000	146,464,000	
		21층이상	1	350,767,753	388,942,247	739,710,000	147,942,000	73,971,000	73,971,000	73,971,000	73,971,000	73,971,000	73,971,000	147,942,000	
		22층이상	1	375,187,753	388,942,247	764,130,000	152,826,000	76,413,000	76,413,000	76,413,000	76,413,000	76,413,000	76,413,000	152,826,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청약자 주택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분양받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을 수 없으며, 1세대 2주택 이상 특별공급 대상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청약자는 본인이 청약한 주택형 이외에 주택소유(공유지분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납입인정금액 충족 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수조정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대상 지역 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대상 토지 취득 후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주택가액의 10% 이내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동안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주택가액의 10% 이내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6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주택가액의 10% 이내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무거주기간 동안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주택가액의 10% 이내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무거주기간 동안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21.12.16.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받아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해당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매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5